

의안번호	2201212
의 퇴 인	박정의원
회 답 일	2024. 7. 26.
추계번호	24D1110

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	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관할 지역의 읍·면·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음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려는 지역이 도서·벽지 또는 인구·면적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등에는 해당 지역의 읍장·면장·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3조(간사 및 사무국 등)	-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, 주민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- 주민자치회는 간사 또는 사무국의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	의무·재량규정
3	안 제16조(주민총회)	-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-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제정·개정 및 폐지, 자치계획,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등을 심의·의결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조(간사 및 사무국 등)	
3	안 제16조(주민총회)	

2. 상세 사유

□ 주민자치회 설치 확대(안 제6조)

- 현행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¹⁾은 읍·면·동에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, 지방자치단체의 위임·위탁 사무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
- 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현행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과 동일하게 읍·면·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인구 또는 면적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, 도서·벽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읍장·면장·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제정안에 따라 도서·벽지 등에 해당하는 읍·면·동에 주민자치회가 추가 설치될 경우, 신설된 주민자치회 운영비용 등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주민자치회는 현재 전국 3,533개 읍·면·동 중 1,274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²⁾
- 다만, 제정안에서 주민자치회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인구·면적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고 있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읍장·면장·동장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

1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(이하 "자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

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2) 2023년 12월 기준, 자료: 행정안전부 홈페이지

으므로, 현재 시점에서 주민자치회 추가 설치 지역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□ 주민자치회 간사 및 사무국의 설치(안 제12조)

- 제정안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간사 1명을 두고, 사무국을 설치할 경우 간사 및 사무국의 직원에 대한 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제정안에서 간사 및 사무국 직원의 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,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무국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□ 주민총회 실시 의무화(안 제16조)

- 제정안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경우, 주민총회 개최 장소 임차료 등의 주민총회 개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각 주민자치회별 자치회원 수, 주민총회 개최 횟수 및 지원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주민총회 개최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함
 - － 주민총회의 소집 대상인 주민자치회원의 정수는 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수가 다를 수 있음
 - － 주민총회의 심의·의결 대상은 주민자치회 규약의 제정·개정·폐지, 읍·면·동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출, 주민자치·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등이므로, 각 주민자치회마다 지역별 실정에 따라 개최 건수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한예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한예슬	02-6788-4831	yeseulhan@nabo.go.kr